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수단 및 임원 단복 지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종합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선수 및 임원에게 단복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단체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지침은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선수 및 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단복 지급 기준)

1. 선수

- 각 종목별로 등록된 선수에게 단복 1벌을 지급한다.
- 선수는 대회 기간 동안 단복을 착용해야 한다.
- 단복은 대회 시작 1주일 전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하며, 선수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기성품 또는 제작품으로 한다.

2. 임원

- 본부 및 각 종목별로 등록된 임원에게 단복 1벌을 지급한다.
- 임원은 대회 기간 동안 단복을 착용해야 한다.
- 임원의 단복은 선수와 동일한 디자인 또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제작하되, 구분을 위한 마크를 추가할 수 있다.
- 임원의 단복 지급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단복 지급 대상 및 절차

제4조(단복 지급 대상)

1. 단복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체육회 임직원(부회장, 이사, 감사)
- 나. 사무처 직원(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
- 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원)
- 라. 체육회 고문(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고문으로 임명된 인원)

- 마. 위원회 위원(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체육발전위원회)
 - 바. 시청 직원(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 사. 읍면동체육회장 및 사무국장
 - 아. 교육청 관계자(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체육 관련 담당 직원 및 임원)
 - 자.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직원)
2. 단복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단복 지급 대상 제외 사항)

1. 기타 직위 및 역할

- 제4조에 명시되지 않은 직위 및 역할을 가진 사람은 단복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미참석자

-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단복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미수령된 단복은 후원 절차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꿈나무 선수 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단복 지급 절차)

1. 단복 지급은 대회 준비팀에서 주관하며,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진행한다.
2. 지급 대상자의 명단은 참가 신청 및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회 전에 확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지급 시 단복의 수량 및 사이즈를 정확히 기록·관리한다.
4. 수량 및 사이즈 기록은 이후의 교환 및 사후처리(A/S)에 활용된다.
5. 단복에 이상이 있을 경우(사이즈 불일치, 불량 등) 즉시 대회 준비팀에 보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단복 납품 및 관리

제7조 (단복 관리)

1. 선수 및 임원은 지급받은 단복을 소중히 관리하고, 대회 기간 동안 항상 착용

하여야 한다.

2. 단복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회 준비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3. 단복 제작은 통합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4. 단복 제작 및 공급업체 선정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회 준비팀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5. 납품은 대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사후서비스(A/S) 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종료일까지 사이즈 교환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6. 대회 준비팀은 단복의 상태를 점검하고,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7. 사이즈 교환 및 불량 처리는 대회 시작 전에 완료되며, 대회 종료일까지 추가적인 교환이나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장 지침의 변경 및 시행

제8조 (지침 변경 및 시행)

1. 본 지침은 필요 시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대회 준비팀 및 관련 임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2. 본 규정의 변경 사항은 대회 준비팀 및 관련 임원들에게 통보되며, 모든 참가자는 변경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9조(기타 사항)

1. 단복 지급과 관련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접수하며, 대회 준비팀에서 처리한다.
2. 대회 진행 중 단복과 관련된 추가적인 필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회 준비팀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